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수수료 안내

[별표1] 공공데이터 이용 수수료 산정기준

[별표2] 공공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

[별표3] 수수료 감면기준(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시스템 이용 및 환자표본자료 제공)

[별표 1]

공공데이터 이용 수수료 산정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석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 시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기간	산정기준
6일 이하	일(日)수 × 50,000원
1주 이상 1개월 미만	[주(週)수 × 225,000원] + [나머지 기간의 일(日)수 × 50,000원]
1개월 이상	[월(月)수 × 700,000원] + [나머지 기간의 주(週)수 ×225,000원] + [월과 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日)수 × 50,000원)

1) 맞춤형연구분석은 이용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및 심사평가원 휴무일인 경우 수수료를 산정할 때 그 말일은 이용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2) 센터 이용은 이용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및 심사평가원 휴무일인 경우 수수료를 산정할 때 그 말일은 이용기간 산정에 제외한다.
3)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공공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시 정보가공 수수료는 자료출력료 및 소프트웨어개발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정보 가공 수수료 = 자료출력료 + 소프트웨어개발비

< 정보가공 수수료 산정 세부내역 >

가. 자료출력료

○ 자료출력료 = 기본료(20,000원/1MB)+추가비용(1,500원×1MB 초과 MB당)

- 기본료 : 출력용량 1MB 이하 20,000원
- 추가비용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1MB당 1,500원씩 추가하되, 단수가 1MB 미만인 경우는 1MB 적용

나. 소프트웨어개발비

(1)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

○ 소프트웨어 개발비 = 보정전개발원가 ×보정계수 ·보정전개발원가: 코드라인수 ×코드라인당단가(합계) ·보정계수: 규모(코드라인수), 어플리케이션유형, 언어,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를 적용

※ 코드라인(Line of Code)수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최소명령단위인 문장들의 수로서 주석문을 제외한 실행문, 환경선언문, 데이터선언문 등을 말함

※ 코드라인당단가

(단위 : 원)

단 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계
코드라인당 단 가	2,335.8	2,950.5	3,933.9	3,073.4	12,293.6

※ 보정계수(0.6708)

= 규모별보정계수(0.65)×어플리케이션보정계수(1.2)×언어보정계수(0.8)×품질 및 특성보정계수(1.075)

(2) 보정계수

가) 규모(코드라인수)별 보정계수

규모	보 정 계 수	규모	보 정 계 수
10,000미만	0.65	300,000미만	1.11
30,000미만	0.85	500,000미만	1.17
70,000미만	0.97	700,000미만	1.21
150,000미만	1.05	1,000,000미만	1.24

※ 코드라인수의 경우 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10,000코드라인 미만의 경우는 0.65를 적용하며 1,000,000코드라인 이상의 경우는 10,000코드라인당 0.0005씩 추가한다.

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 정 계 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 정 계 수
업 무 처 리 용	1.0	시 스 템 용	1.7
과 학 기 술 용	1.2	통 신 제 어 용	1.9
멀 티 미 디 어 용	1.3	공 정 제 어 용	2.0
지 능 정 보 용	1.7	지 휘 통 제 용	2.2

<어플리케이션유형 분류 기준(예시)>

어플리케이션유형	범 위
업 무 처 리 용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 관리 및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과 학 기 술 용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스프레드시트, 통계, OR, CAE 등
멀 티 미 디 어 용	그래픽,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오락용 등
지 능 정 보 용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시 스 템 용	운영체제, 언어처리 프로그램, DBMS,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윈도시스템, CASE, 유틸리티 등
통 신 제 어 용	통신프로토콜, 에뮬레이션, 교환기소프트웨어, GPS 등
공 정 제 어 용	생산관리, CAM, CIM, 기기제어, 로봇제어,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지 휘 통 제 용	군, 경찰 등 군장비·인력의 지휘통제를 요하는 소프트웨어

다) 언어보정계수

언 어 구 분	보정계수
Assembly, 기계어, 자연어	1.9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COBOL, FORTRAN, PL/1, PASCAL, Ada	1.0
ABAP4, Delphi, HTML, Power 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등)	0.8
EXCEL, Spreadsheet default, Screen painter default	0.6

라)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요구 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별표 3]

수수료 감면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시스템 이용 및 환자표본자료 제공 등의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 감면율(%)	100%	80%	50%	비고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O			
② 지방자치단체	O			
③ ① 및 ②와의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해당 과제에 한함)		O		
④ 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심사평가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해당 과제에 한함)	O			
⑤ 심사평가원 공모전 수상과제를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해당 과제로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O			
⑥ 설립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생 창업기업	O			
⑦ 공공기관		O		
⑧「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O		
⑨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심사평가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		O		
⑩「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			O	
⑪「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O	
⑫「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O	
⑬ 학술단체(학회) 및 의약단체(협회)			O	
⑭ 보건의료 분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자			O	※증빙자료: 수료증/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등

※ 감면기준이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